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,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「행정 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.

- 다 음 -

- 1. 공고기간 : 2026. 7. 22. ~ 2026. 8. 6. (15일간)
- 2. 공고방법 : 시군구보, 게시판, 파주시 홈페이지 게재
- 3. 직권말소일시 : 2026. 8. 7.
- 4. 공시송달 내용

가. 예정된 처분의 제목	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				
나. 당사자 (소유자)	성명	민○남			이○운			
	주 소 (대장상주소)	파주시 파평면 율곡4리 299			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392-4			
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		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함.						
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<건축물대장 현황>						
		대지위치	소유자	층수	구조	용도	건축(연)면적(㎡)	비고
		파평면 율곡리 299	민○남	1층	목조	주택	39.67㎡	11-1633
		광탄면 신산리 392-6	이○운	1층	블록조	주택	31.89㎡	신산 4-65
마. 법적근거 및 조문	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						

- 5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청 허가총괄과(☎031-940-297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22일

파 주 시 장



